

제 557 호
1976.5.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조	례	
제 1040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3
제 1041 호 :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	4
◎규	칙	
제 1588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5
제 1589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7
◎고	시	
제 120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및지자승인	7
제 121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도) 결정및지자승인	8
제 122 호 :	동청사위치변경고시	8
◎공	고	
제 124 호 :	K.S 표시정지 처분공고	9
제 12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9
제 1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 127 호 :	방전단속기간연장	14
제 128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4
제 41 호 :	(도봉구공고) 공인개작공고	14
◎사	령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635

81

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5. 31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0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 2 호서식)

입원 (유 료 환 자) 서 약 서

1. 본인은 귀원의 모든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귀원의수술, 검사 기타일체 지시에 순응하고 그로인한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귀원의 지시에 따라 입, 퇴원 기일을 엄수 하겠습니다.
4. 입원중 신상에 관한사건 및 입원치료비의 납부는 물론 병원시설에 손해를 끼쳤을때는 보증인이 연대책임하에 이를 변상하겠습니다.

197 년 월 일

환 자 본 인

(인)

보 증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 증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제 3 호서식)

입원 (무료환자) 서약서

1. 본인은 귀원의 모든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귀원의수술, 검사 기타 일체지시에 순응하고 그로인한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귀원의 지시에 따라 입, 퇴원기일을 엄수 하겠습니다.

197 년 월 일

환자 (인)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악단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6. 5. 31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1 호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시민정서생활의 함양
과 민족교유 문화를 정화육성하고
음악예술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악단 (이하 " 악단 " 이라 한다) 을
둔다.

제 2 조 (위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 한다.

제 3 조 (명칭) ① 악단은 시립교향악

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한다.

②시립교향악단내에 소년소녀 합창
단과 관현악단을 둔다.

③시립국악관현악단내에 무용단을
둔다.

제 4 조 (구성) 악단에 단장, 부단장,
상임지휘자, 안무자 및 총무를
둔다.

1. 단장은 서울특별시 제 1 부시장
이 된다.

2. 단장은 시장의 명을받아 안무
를 정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4.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지휘자와 안무자는 음악및 무용에 권위있는 인사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6. 상임지휘자는 음악에 관한사항을 관장하며 연주를 지휘한다.

7. 총무는 상임지휘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8.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지휘자외에 명예 지휘자를 둘 수 있다.

제 5조 (기능) ①교향악단은 교향악보급과 음악예술 진흥을 위한 연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국악관현악단은 민족고유 문화를 정화 육성하며 국악연주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③무용단은 민족고유 무용을 육성하며 고전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소년소녀 합창단은 어린이의 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연주를 관장한다.

⑤관현악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선도적인 음악연주와 시민위안을 위한 연주를 관장한다.

제 6조 (정원) ①악단에는 필요한 공무원 및 연예사를 들수 있다. ②공무원및 연예사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조 (수당)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 연주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제 138호및 서울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 설치조례제 363호는 이를 폐지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88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5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3 조 (기동대) ①기동대에 행정계
, 작전계, 장비계, 진압중대 및 특별
순찰대를 두고 계장(중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기동대의 계별(중대별)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계

- 가. 복무 및 인사
- 나. 문서통제 및 보존관리
- 다. 포상 및 감찰업무
- 라. 경리 및 용도업무
- 마. 시설관리 및 유지
- 바. 자체경비

2. 작전계

- 가. 교육훈련 및 근무계획
- 나. 작전 출동계획
- 다. 상황실 운영
- 라. 통신 기재관리
- 마. 대원 비상 소집

3. 장비계

- 가. 차량유지관리
- 나. 무기 탄약관리
- 다. 다중범죄 진압장구 관리
- 라. 급,대여품 관리

4. 진압중대

- 가. 다중범죄 진압
- 나. 작전경비 업무수행
- 다. 경과되는 지원근무

5. 특별순찰대

- 가. 방법 기동순찰대 및 형사환
동 집행
- 나. 중요범죄 및 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지원(현장보존, 교통정
리, 무선망구성)
- 다. 비상사태시 거점확보
- 라. 교통소통 장애요소및 제사범
단속
- 마. 기타 특별명령사항

제 55 조의 2 호 제 "22 특별경비대" 를

" 22 특별경호대 " 로 하고, 동조

제 1 항중 " 22 특별경비대 " 를

" 22 특별경호대 " 로 " 경비대장 "

를 " 경호대장 "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89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례시행규칙중시행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입원보증금) 유료환자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별지제 2 호서식, 별지제 3 호서식 및 별지제 4 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도로시설조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20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령 제 7754 호 (75.8.22)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2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 별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m	130m	대방동 39-1	대방동 68-7	
"	"	3	6 m	110m	" 39-2	" 39-3	

나. 하수도 시설조서						
명칭	구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하수도	암거	3 m	50 m	대방동 80	대방동 39-1	복개 후 도
"	"	2 m	130 m	" 39-1	" 68-7	로로 사용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1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지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제 7754

호 (75.8.22)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 6. 2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청사연결지하도	중앙청서편-정부 종합청사북측	폭 : 11.3 m 연장 : 125.6 m	차도및보도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2 호

동청사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제 1 동 사무소

위치가 다음과 같이 임시 변경되었기 고시한다.

1976. 5.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구명	동명	위치		이전일자
		변경전	변경후	
성북구	돈암제 1 동	성북구돈암동 22 - 4	성북구돈암동 5-140, 5-143	75.5.30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4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공업진흥

청고시 제 4175 호 제 10 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다.

1976. 5.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1010	1011	866
2. 허가일자	74.12.24	74.12.14	73.11.26
3. 제조업체명	신진밸브공업사	신진밸브공업사	문래공업사
4. 대표자	박찬연	박찬연	이장원
5. 소재지	영등포가리북동 444	좌 동	영등포동 1가 119
6. 규격번호	KSB 2303	KSB 2312	KSB 8016
7. 품명	청동 5 KS/cm 나사식 이트밸브(호칭 25 mm)	청동 10 KS/cm 나사식 앵글밸브(호칭 25 mm)	자전거용핸들
8. 처분기간	1976.6.30. 당시 해제조치가 있을때까지	좌 동	좌 동
9. 표시정지사유	KS 미달	좌 동	좌 동
10. 기준미달항목	치수	좌 동	좌 동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6 호(76.3.22)
로 고시된 병원천 개수공사 구간

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
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
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6.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위치 : 마포구당인리철교-한강</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봉원천 개수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B = 20 m 나. L = 200 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4.1 ~ 77.11.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p>
<p>지 적 (토 지) 조 서</p>	

도 면 호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소 유 자	비 고
1	구수동	102-9	하천	324	구 수 동 78	김 창 희	
2		102-10	대	100	충무로 2 가 66	협화산업(주)	
3		102-11	하천	62	구 수 동 78	김 창 희	
4		102-15	"	9		이 등 정 일	
5		102-2	"	37		"	
6		102-6	전	21		"	
7		101-28	대	98	구 수 동 101-29	정 등 미 자	
8		101-26	"	221	충무로 1 가 24-23	이 성 물 산(주)	
9		102-3	하천	39		이 등 정 일	
10		101-32	대	68	창 전 동 210	김 경 삼	
11		101-33	"	93	" 210	"	

15
9

도면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소유자	비고
12		101-41	대	33	구수동 101-41	손기태	
13		163-1					
14		103-2	"	26	-	이등정일	
15	신정동	28-9	잡종지	34	삼정동 35-82 계동 74-3	김영식 박영식	
16		28-7	"	27	"	"	
17		28-10	"	50	"	"	
18		96-24	"	34	"	"	
19		96-27	"	49	"	"	
20		28-1	"	40	"	"	
21		28-2	"	34	"	"	
22		27-1	"	39	"	"	
23		27-2	"	35	"	"	
24		27-3	"	48	"	"	
25		27-4	"	37	"	"	
26		27-5	"	48	"	"	
27	창전동	153-8	도로	8		국	
28		153-2	"	117	-	서울특별시	
29		153-7	하천	27	-	국	
30		153-6	"	220	-	"	
31		165-4			(구간 이외의 토지임)		
32	신정동	98-2	잡종지	31	-	경성부	
33		97-1	전	36	창전동 374	김용배	
34		97-2	잡	12	-	경성부	

도면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소유자	비고
35	신정동	145-2	전	68	창전동 382	최영봉	
36		145-1	"	169	봉익동 162	진영환	
37		146-2	"	107	저동 2 가 69-7	촌도우사	
38		146-3	잡	86	-	경성부	
29		146-4	전	33	"	촌도우사	
40		146-6	"	23	"	"	
41		146-7	잡	79	-	경성부	
42		147-1	"	16	-	"	
43		147-2	"	26	상수동 45	곽영보	
44		144-1	"	21	-	경성부	
45		144-3	전	50	-	"	
46		146-1	잡종지	5	-	"	
47		146-5	전	2	-	"	
48		146-8	"	4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고 공람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로
고시된 방사 4 호선 (마장동-신답로) 도
로 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
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1

서울특별시 장

<p><공람개요></p> <p>1. 사업장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일부</p> <p>2. 사업장의 종류와 명칭 : 방사 4호선(마장동-신답로) 도로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B = 50m 나. L = 660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5.1-77.6.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용답동	128	공	2773.3	128	공	931.2	성북구마장동 483	하재용 외 1인	
2	"	172-2	대	59.9	172-2	대	59.9	중구무교동 13	이상옥	
3	"	128-1	도	222.6	128-1	도	129.7		서울특별시	
4	"	128-2	도	361.9	128-2	도	147.4		"	
				계			1,268.2	평		
1	용답동	175-1	대	46.3	175-1	대	46.3	서대문순화7-17 양주군별내, 고산116	이해승	
2	"	175-4	대	171.4	175-4	대	171.4	"	조호능	
3	"	175-5	대	100	175-5	대	100	"	"	
4	"	176	대	180.7	176	대	180.7	동대문신설동 154-45	김학명 외 1인	
				계			498.4			

<p>◎ 서울특별 시공고제 12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방전단속기간연장</p> <p>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전단속(역류박살)기간 연장 가속전염병예방법 제 10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2호에 의거 단속 실시중인 방전 단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실시함을 공고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 . . 서울특별시 장</p> <p>1. 실시목적 : 광견병의 전염 미연 방지</p> <p>2.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p>	<p>3. 연장실시기간 : 76.6.2 ~ 6.19</p> <p>4. 실시방법 : 각구 출장소별로 단속반 편성 단속함.</p> <p>◎ 서울특별 시공고제 12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용품 제조업허가취소</p>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 . . 서울특별시 장</p>
---	--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안전사	이호웅	1-5-18	성동구성수동 2가 272-5	법정기간내에 형식승인 미취득

<p>◎ 도봉구 공고제 4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 개작 공 고</p> <p>다음과 같이 당 구청 호적 병사 용 직인 및 호적 병사용 개인과</p>	<p>일반 및 민원용 개인을 폐기하고 개작 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 . . 도 봉 구 청 장</p>
---	---

<p>1. 공 인 명 :</p> <p>도봉구청장직인 (호적병사용)</p> <p>계 인 (호적병사용)</p> <p>계 인 (일반및민원용)</p>	<p>2. 사용개시일시 :</p> <p>1976. 6. 1 09:00</p> <p>3. 공인및인명 :</p> <p>별 첨</p>
<p><u>공 인 인 영</u></p>	

구청명	폐 기 인 영	개 작 인 영
<p>도 계</p> <p>봉 구</p> <p>청 장 직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사 령</p> </div> <p>© 1976.5.19</p> <p>서울특별시 지방건축 권 태 정 내무부전입 기 관</p> <p>종로구근무를 명함.</p> <p>© 1976.5.27</p> <p>관 악 구 지 방 행정 사 최 규 상</p>	<p>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서 대 문 구 지 방 토 목 박 한 성 기 원 보 시 보</p> <p>발령호수 227 (76.4.21자)</p> <p>신규임용을 본인 임용포기로 이름 동일자로 취소함.</p> <p>© 1976.5.31</p>
---	---

<p>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진 영 호 사무관</p> <p>도시계획과 종합계획계장에 보함.</p> <p>사 회 과 지방행정 이 영 규 사무관</p> <p>사회과노동계장에 보함.</p> <p>기획담당관 지방행정 이 정 원 사무관</p>	<p>순찰담당관 순찰 2 계장에 보함.</p> <p>© 1976. 6. 1</p> <p>영등포수원지 지방전기 김 주 환 기 원</p> <p>복지을 명함.</p> <p>종합종말처리사업소근무를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15